

## [종합] 15년 만의 재판 드들강 살인사건 진범 '공방'

등록 2016.11.07 19:07:35 | 수정 2016.12.28 17:53:34

법의학자-동료재소자 등 증인 출석  
피고인 성폭행·살인 등 공소사실 부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5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재판이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피고의 유죄를 확신하는 검찰과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초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km 가량 떨어진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같은 날 법정에는 이 사건 감정 법의학자와 당시 부검 관계자, 김씨의 동료 재소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5년 만의 기소 과정에 감정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는 "성폭행(검찰 전제)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즉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살인까지 실행한 것이 확실시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이어 "(물속에서) 목을 조를 때 피해자의 저항능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부검 사진을 보면 사망 뒤에도 피해자의 얼굴색이 붉다. 이는 얼굴에 혈액이 모인 것이다. 사망때까지 율혈현상이 계속됐다는 방증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 까지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사망 전 성폭행이 있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낮은 수위의 물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국과수 부검팀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 가슴 부위의 상처 중 특히 손목의 상처는 타인에 의한 공격과 방어 과정 또는 제압당했을 때 생기는 일반적 상처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검사는 이 같은 증언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즉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가 김씨의 것으로 판명됐으며, 성폭행범이 살인범일 확률이 높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김씨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당시 과학수사요원의 일부 검증 방법과 절차 등에 의문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법의학자의 증언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사실상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8월 말 이뤄진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의 인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성폭행이나 살인은 없었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재소자 A씨는 "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감돼 있는 김씨가 내가 법률적 지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나에게 접근해왔다"며 "이후 소송절차, DNA와 관한 판례와 서적,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물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내가 '검사 또는 판사라면 이 사건과 관련해 무슨 질문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와 편지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질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 질문지에 답이 적혀져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당시 '자기 주변에 여자가 많았다. (박 양이) 우연히 걸려들었다. 성관계 시도 중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제압했다. 현장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범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A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며 반박에 나섰다.

김씨의 변호인은 A씨가 교도소에서 김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A씨가 검찰에 보낸 서신(김씨와 주고받던 질문지 등 서신)의 위조 여부 등을 캐물으며 A씨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끝에 15년 만인 지난 8월 초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 기소에 이르렀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